

(앞쪽)

(년 귀속) 종합소득에 대한
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
(단일소득·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)
(연금·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)

거주구분	거주자1 / 비거주자2
내 · 외국인	내국인1 / 외국인9
가정지역	가정지역코드

① 기본사항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			
	③ 주소				
	④ 납세기	* 12월31일(사망한 경우 사망일, 출국의 경우 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(시·군·구 단위)			
⑤ 신고유형	⑩ 추계 - 단순을	⑥ 기장의무	⑦ 간평장부대상자	⑧ 신고구분	⑨ 정기신고, ⑩ 수정신고, ⑪기한후 신고

② 지방소득세의 산출근거

구 분	금 액
⑧ 과세표준 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㉓ 과세표준란의 금액	
⑨ 세 율 : 「지방세법」 제92조에 따른 세율 적용	
⑩ 산출세액 : [과세표준(⑧)×세율(⑨)-누진공제액]	
⑪ 세액공제 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㉔ × 10%	
⑫ 세액감면 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(㉕, ㉖)란에 해당하는 감면금액 합계액)×10% ※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“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”과 “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제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”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.	
⑬ 결정세액 : ⑩ - (⑪+⑫)	
⑭ 가산세액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「지방세법」 제99조에 따른 가산세	
⑮ 총 결정세액 : ⑬ + ⑭	
⑯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㉗×10%	
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: ⑮-⑯	

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.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(www.wetax.go.kr)를 하시거나, 앞쪽의 자르는 선 아래 납부서에 “X” 표기 후 뒤쪽의 신고서(또는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의3서식)를 작성하여 납세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, 뒤쪽의 납부서(또는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)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.

< 자르는 선 >

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
납세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
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「지방세법
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
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
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읍·시·군

(수납은행 확인용)

납세기:

기관번호

세목

납세연월기

과세번호

전자납부
번 호

세 목

납부세액

합 계

수납은행
바코드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읍·시·군

(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(납세자용)

납세기번호	과세기관	검 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 구분	음면동	과세번호	검

납 세 자:
주 소:
납 세 지:

납세기번호:

납부기한:

바코드
18mm

음성
안내

납부세액	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

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(유효기간: 일 까지, 납부가능시간: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)

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※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5항에 따라 위의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.

담당자: 문의처: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수납인

전자납부
번 호

관리번호	-	(년 귀속)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(단일소득·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) (연금·기타소득 함께 있는 경우 포함)	거주구분	거주자1 /비거주자2
			내·외국인	내·국인1 /외국인9
			거주지국	거주지국코드

① 기본사항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소	④ 전자우편주소
⑤ 납세지	※ 12월31일(사망·출국의 경우 사망일·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 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	
⑥ 주소지 전화번호	⑦ 주사업장 전화번호	⑧ 휴대전화번호
⑨ 신고유형	⑩ 추가 - 단순율	⑪ 신고구분
⑫ 환급금 계좌신고	⑬ 금융기관명	⑭ 계좌번호

③ 지방소득세액의 계산	
구	분
⑭ 과세표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② 과세표준란의 금액	금 액
⑮ 세 율: 「지방세법」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	
⑯ 산출세액: [과세표준(⑭)×세율(⑮) - 누진공제액]	
⑰ 세액공제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③ ×10%	
⑱ 세액감면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(⑳, ㉑)에 해당하는 감면금액 합계액)×10% ※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“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”과 “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”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.	
⑲ 결정세액: ⑯ - (⑰+⑱)	
⑳ 가산세액:	무(과소)신고
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납부지연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, 기타란에는 「지방세법」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	납 부 지 연
	기 타
	합 계
㉑ 총 결정세액: ⑲+㉑(합계란 금액)	
㉒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㉓×10%	
㉓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: ㉑-㉒	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장애인증명서(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,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 2. 기부금명세서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5호서식) 및 기부금납입영수증(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각 1부 3. 가족관계등록부(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,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
------	--

※ 해당 첨부서류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및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, 세액의 신고·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

< 자르는 선 >

(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(시·군·구 보관용)	
납 세 지	※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·군·구까지 기재합니다.
성 명	주민등록번호
납부세액	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
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.	
년 월 일	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
(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(수납은행보관용)	
주 소(납세지)	※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를 시·군·구까지 기재합니다.
성 명	주민등록번호
납부세액	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
년 월 일	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	
OO수납기관 귀하	
(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(납세자보관용)	
주 소(납세지)	※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소지 시·군·구
성 명	주민등록번호
납부세액	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
년 월 일	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	
년 월 일	
OO수납기관	